

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20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평동 한센간이양로시설 부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

(단위 : m', 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평)	지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계			454 (137)			138,470
구평동 한센간이양로시설 건립 부지매입	토지	435-178	454 (137)	대	한센간이양로시설 예정부지	138,470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○ 회계명 :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

구 분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고	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454	138,470				1	454	138,470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1	454	138,470				1	454	138,470	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4.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2003년도 취득재산 목록(7-2)

(단위 : m'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 분	소재지	지 목 (구조)	면 적(규모)						
계			454(137평)	138,470					
토 지	구평동 435-178	대	454(137평)	138,470	2003. 11월중	구평동 한센간이양로시설 건립 부지매입	정삼조	사하구	